

중대재해 사례 및 교훈



DODBOM E&C
주식회사 돈봄이앤씨

목 차

1. 중대재해 도입배경
2. 중대재해 주요내용
3.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4.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및 교훈
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제 1장.

중대재해 도입배경

제1장: 중대재해 도입배경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 원천→하청 '위험한 외주화'

강남역 성수역-구의역 '판박아' 사고 잇따라 발생
매뉴얼·안전장치 무작동 김 씨 사망 당일 재구성
불편한 외주화 구조, 밀연적 메피아 탄생 구조
서울시 메피아 적절 안전업무 직영전환 필수



뉴스포스트 [노동과인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재조명

▲ 지난날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고(28일)를 당해 목숨을 잃은 김 모(19)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에 의해 주요공간으로 변모한 9·4 승강장의 모습 (사진=뉴스포스트 안옥희 기자)

2020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 누출 질식사

입력 : 2020.05.21 13:37 | 수정 : 2020.05.21 16:02 | 김지환 기자

양신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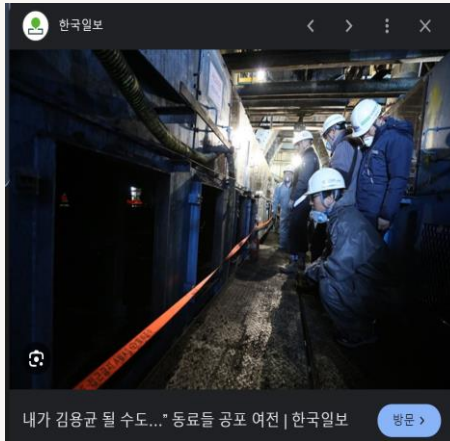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 누출 질식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내 140만 배 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씨(34)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현장 파이프 사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2018년



내가 김용균 될 수도... 동로들 공포 여전 | 한국일보

방문 >

199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시민들이 3월 서울 여의도 육시원에서 1774번째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인 전직 배구선수 연은주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원 기자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노동자 연대) 320호 1 입력 2020-04-30 14:30

김승주

가



세계노동절인 5월 1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이민환

2014년

진도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현장을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

날짜

2014년 4월 16일(10년 전)

제1장: 중대재해 도입배경

■ 중대재해 도입배경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
-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고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암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제 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안전보건확보)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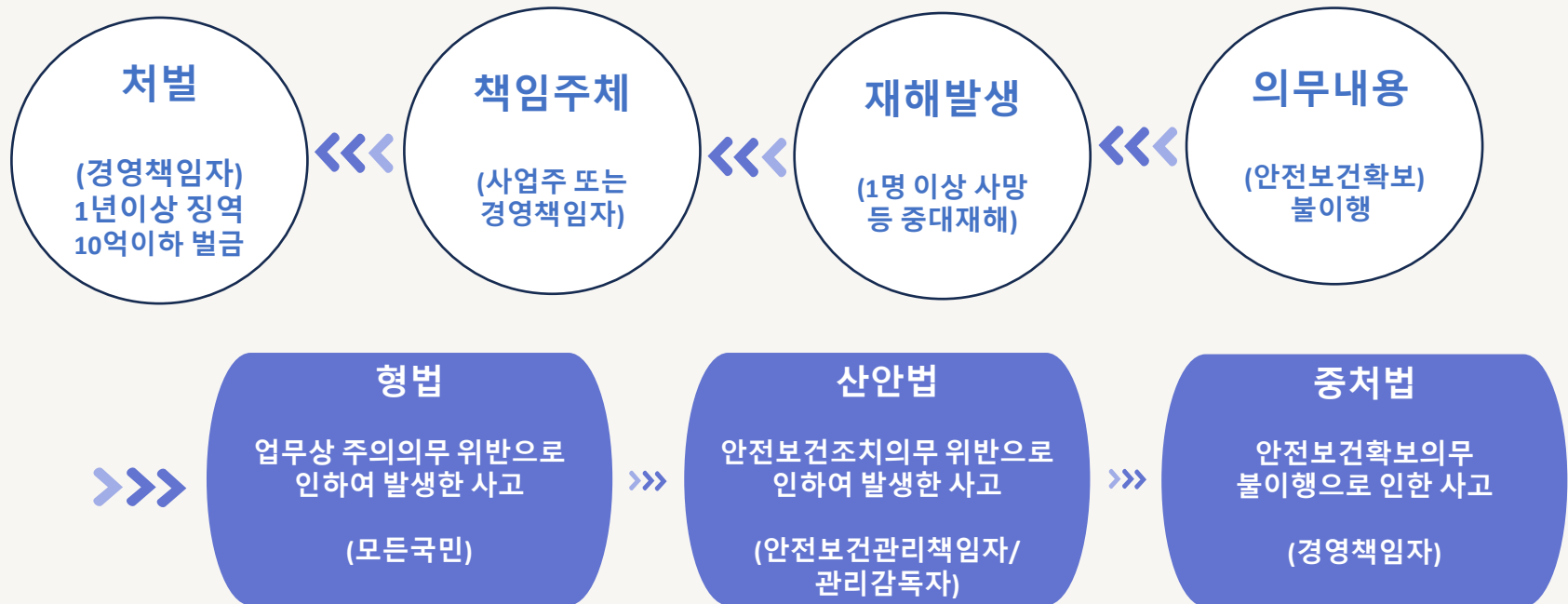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률

☞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 사고 후의 형사 처벌위험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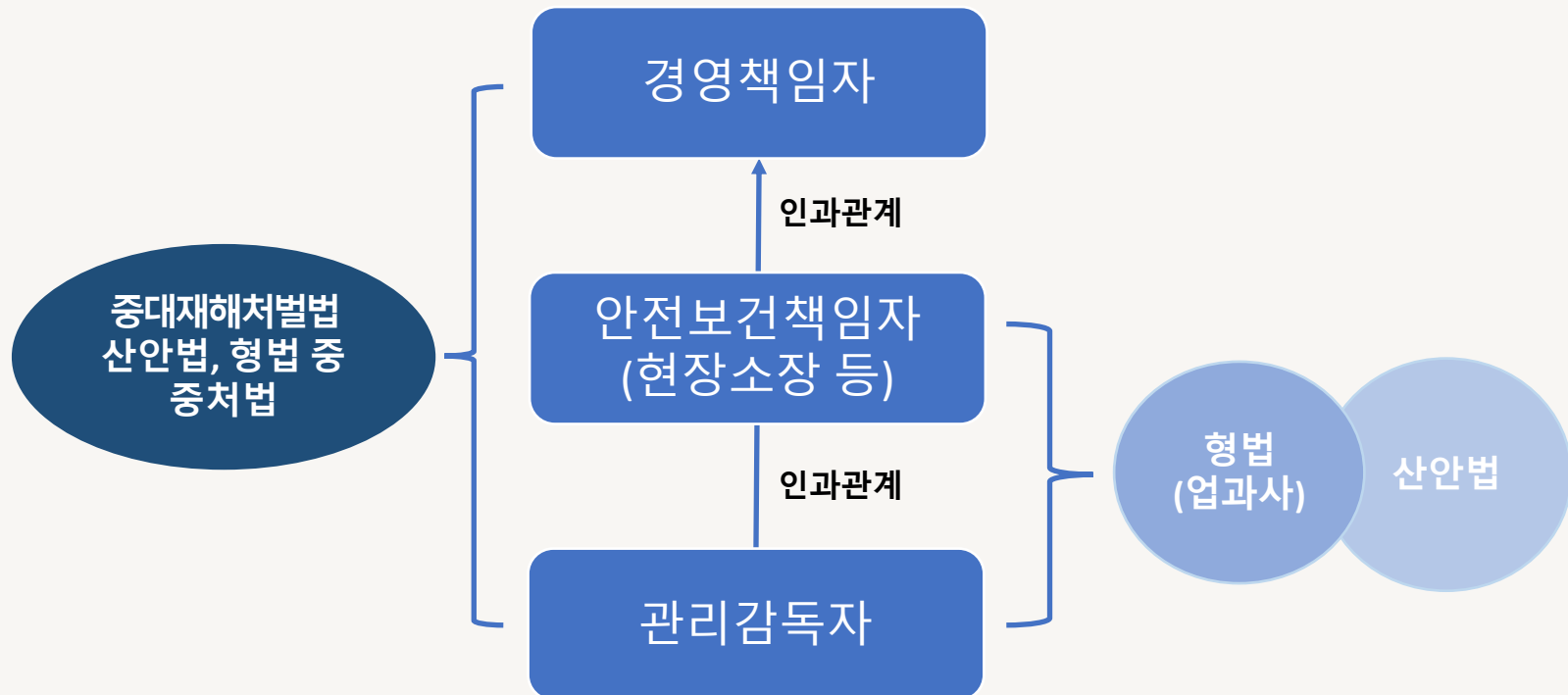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의의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 관련 적용법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 주체

- 의무의 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의무의 대상: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예방
- 법령상 의무(중처법 제4조)
 -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명령 이행 조치
 -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9.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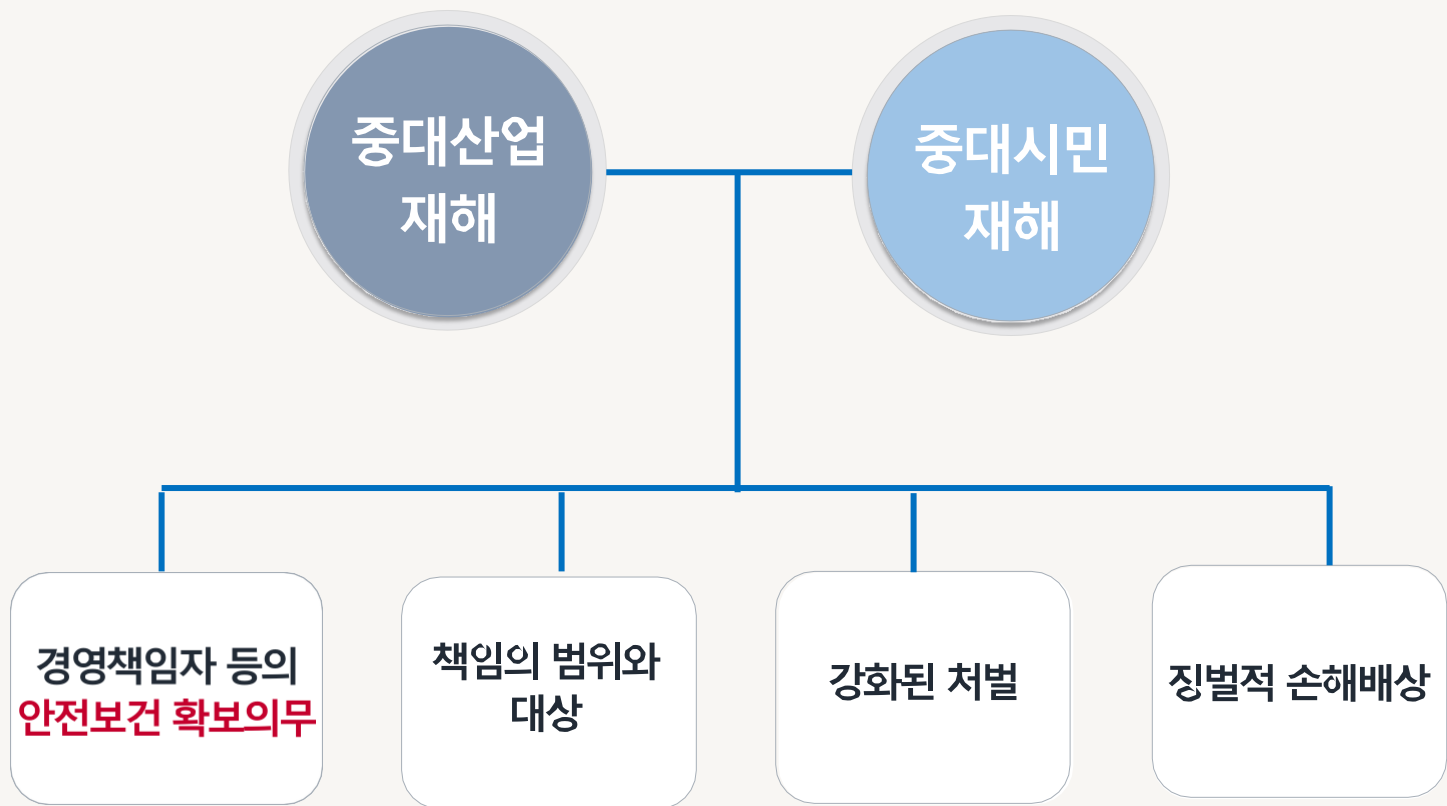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독성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산안법상 중대재해 개념과 구분 필요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 사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범죄 성립요건

(1) 위반행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2) 위반요건

고의에 의한 사고

(3) 행위 객체

종사자

(4) 행위 결과

중대재해 발생

(5) 인과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중대재해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법 제4조) - (1) 위반행위_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4조)
 - 인적, 물적 기반과 시스템 구축의무(조직설치, 인력 충원, 예산지원, 운영체계 확립)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5조)
 - (1) 법령 이행 상황에 대한 반기 1회(연 2회) 이상 점검결과 보고
 - (2) 불이행 사항에 대한 인력, 예산지원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3)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 보고
 - (4)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1) 위반행위_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시행령 제4조)

번호	조치내용(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경우) ③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이행 (산안법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2회 이상 평가, 관리 ⑥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시간 보장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하여 개선방안 마련 이해 여부 점검 및 조치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 점검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시 구호조치 등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1) 위반행위_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조사 및 결과 분석+ 현장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유해, 위험요인 및 발생 원인 파악 - 유해,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 검토 -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선, 시정 명령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정지도, 권고사항, 조언 포함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것(전문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이상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 불이행 보고 시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2) 위반의 요건

- 결과에 의한 책임: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불문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미필적고의)
-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해당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것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예견 가능성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3)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또는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자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4) 행위 결과: 중대재해의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5) 인과관계(3단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제거 실패



중대재해 발생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와 산안법의 이행의무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법 제4조, 제5조)

vs.

안전보건조치의무(산안법 제38조, 제39조)

<중대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경영책임자의 업무)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산안법 제38조>

- ① 작업도구 및 물질로 인한 위험
- 설비에 의한 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등
- ③ 위험한 장소로 인한 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및 비레, 천재지변 등

▶ 현장의 전문적, 실무적 조치(현장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산안법 안전, 보건조치 이행의무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물질**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작업방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작업환경**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제2조 제 1호)

- ① 업무와 관련성이 가지는 건설물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요인(작업환경)
-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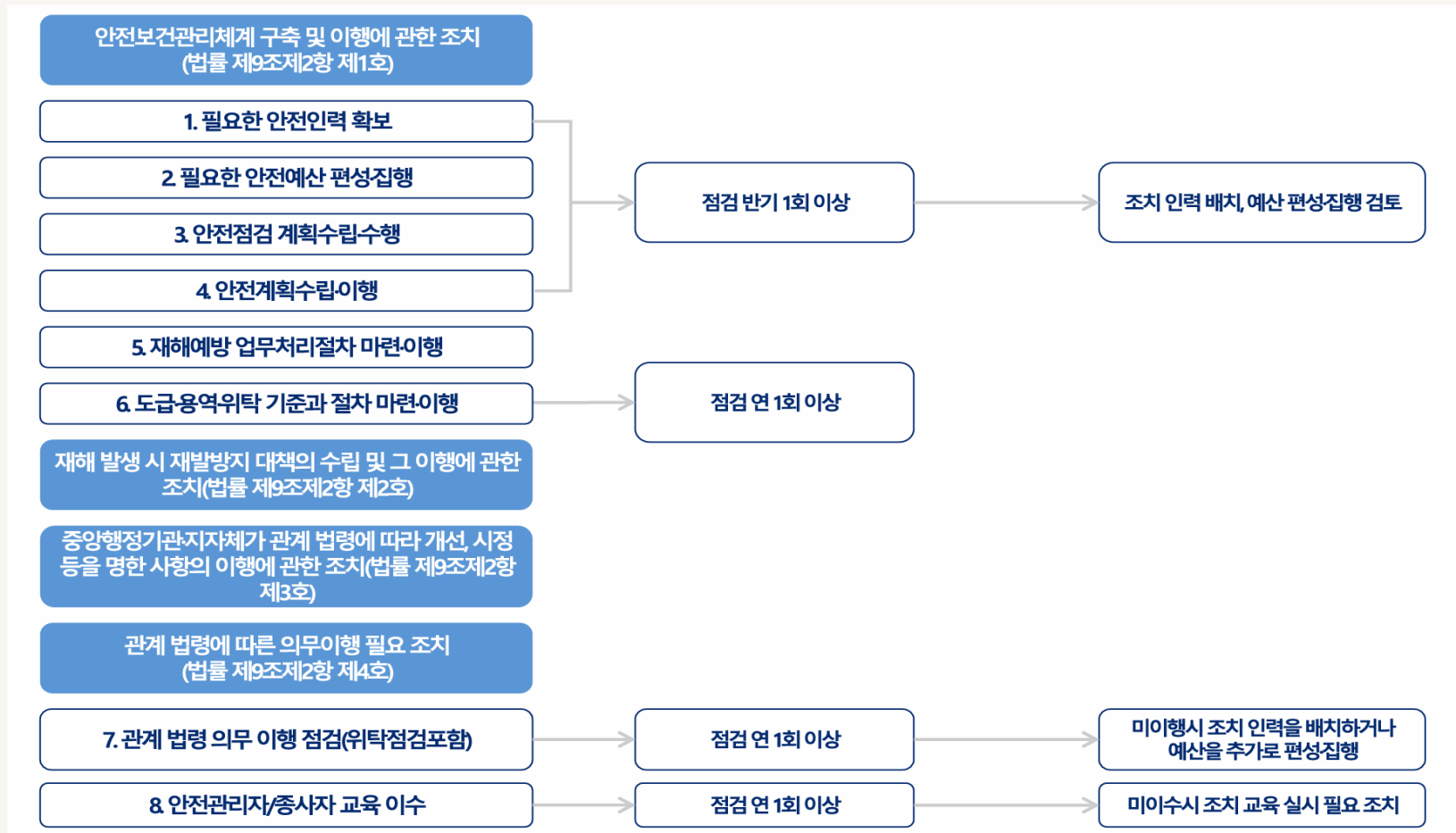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 경영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적용
2. 법정형량 및 양형의 강화	사망시 • 중처법: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산안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3. 징법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	유족과의 합의 난항 - 형사 사건에 영향
4.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본사에 대한 근로 감독가능
5. 언론, 시민단체 및 노동계 관심증대	사건 및 분쟁의 발생 자체가 위험요소
6. ESG 경영가치 하락	종합적 위기 직면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Flow Chart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법체계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제38조, 제 3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처벌 • 도급인의 안전, 보건조치: 제 6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 4조, 제5조, 제9조 → 경영책임자 등 처벌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 제268조 → 실무자(관리감독자 or 안전관리자)처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 ① 산재예방계획수립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③ 안전보건교육
- ④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 ⑤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산재통계 기록유지
- 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확인,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기준규칙)

■ 관리감독자(제16조)

- ① 지휘·감독하는 작업 관련 기계기구,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②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③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④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지 위험파악 및 개선조치 참여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법체계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성격	- 사전규제+사후규제 - 사업장 대상 규제, 전문적, 공학적 규제	- 사후규제 - 전사(全社)대상규제, 경영관리적 규제
책임구조	- 재해발생 여부와무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 규칙:673개) 위반을 처벌 -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예 176조 2항)	- 중대재해발생 → 범죄 성립요건 -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 자체는 불 처벌 -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 → 인과관계 중요
	고의범만 처벌(확정적+ 미필적 고의)	
	- 양법의 실제적 경합관계 - 형사상 과실치사상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	
수사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경찰, 검찰	(중대산업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경찰, 검찰 - 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중대시민재해) 경찰, 검찰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법체계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안전보건 증진
- 예방중심 > 처벌(행위자)
 - 예방의무 위반 확인되면 처벌
 - 중대재해 결과 발생시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목적)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경영책임자 처벌
- 결과중심 / 강력한 처벌 > 예방
 -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 처벌은 없지만
 - **중대산업재해 + 의무사항 불이행(위반) + 고의성 : 처벌**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법체계 비교

[산업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 의무 주체: 사업주
-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 양벌규정: 사업주 & 행위자
- ☞ 산업재해 예방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 의무
예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의무주체: 경영책임자등
- 행위자: 경영책임자등
-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 법인
-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시정 등
-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법체계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자 1년 내 3명 이상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_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 조항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자연인(제167조, 제168조)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1/2을 가중 (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제6조)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1/2을 가중
	▶ 법인(제173조)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제7조)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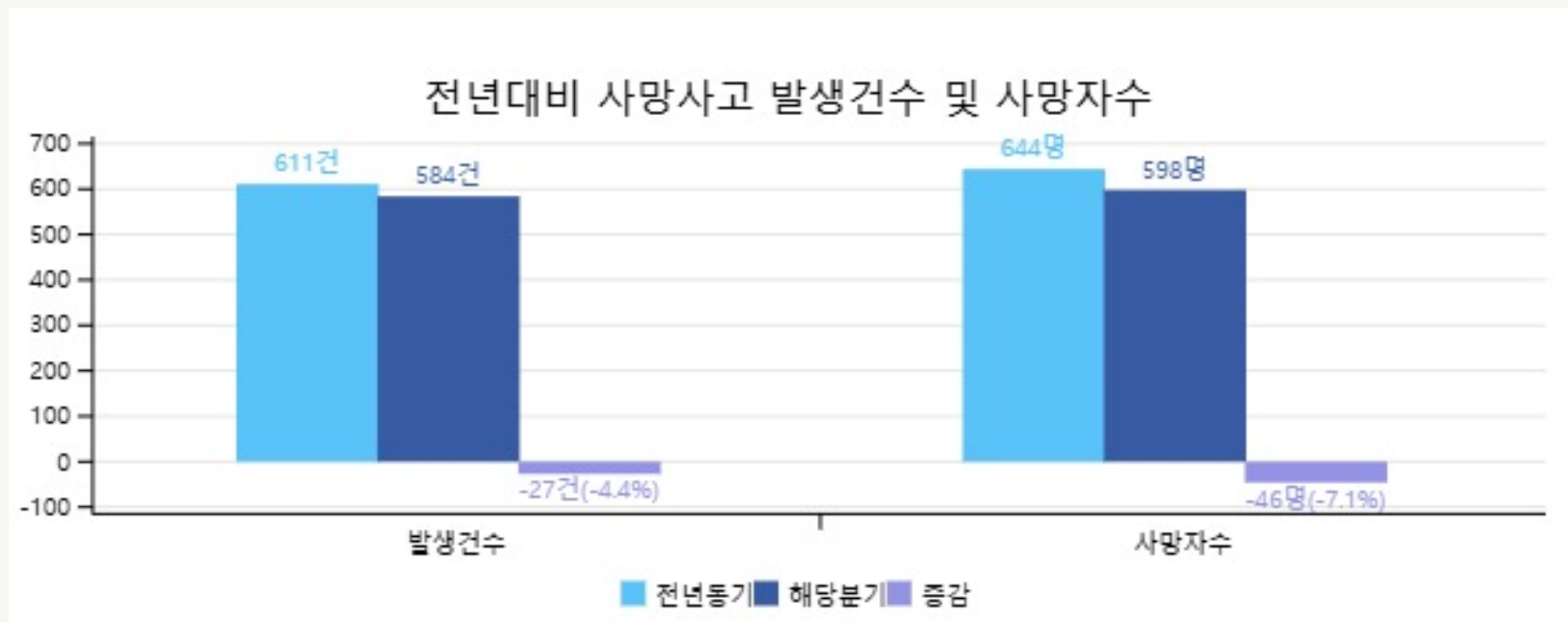


제 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 발생현황(2022,2023년)



출처: [2023년 산업재해 통계(24.3.7 고용노동부)]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 발생현황('22,'23년)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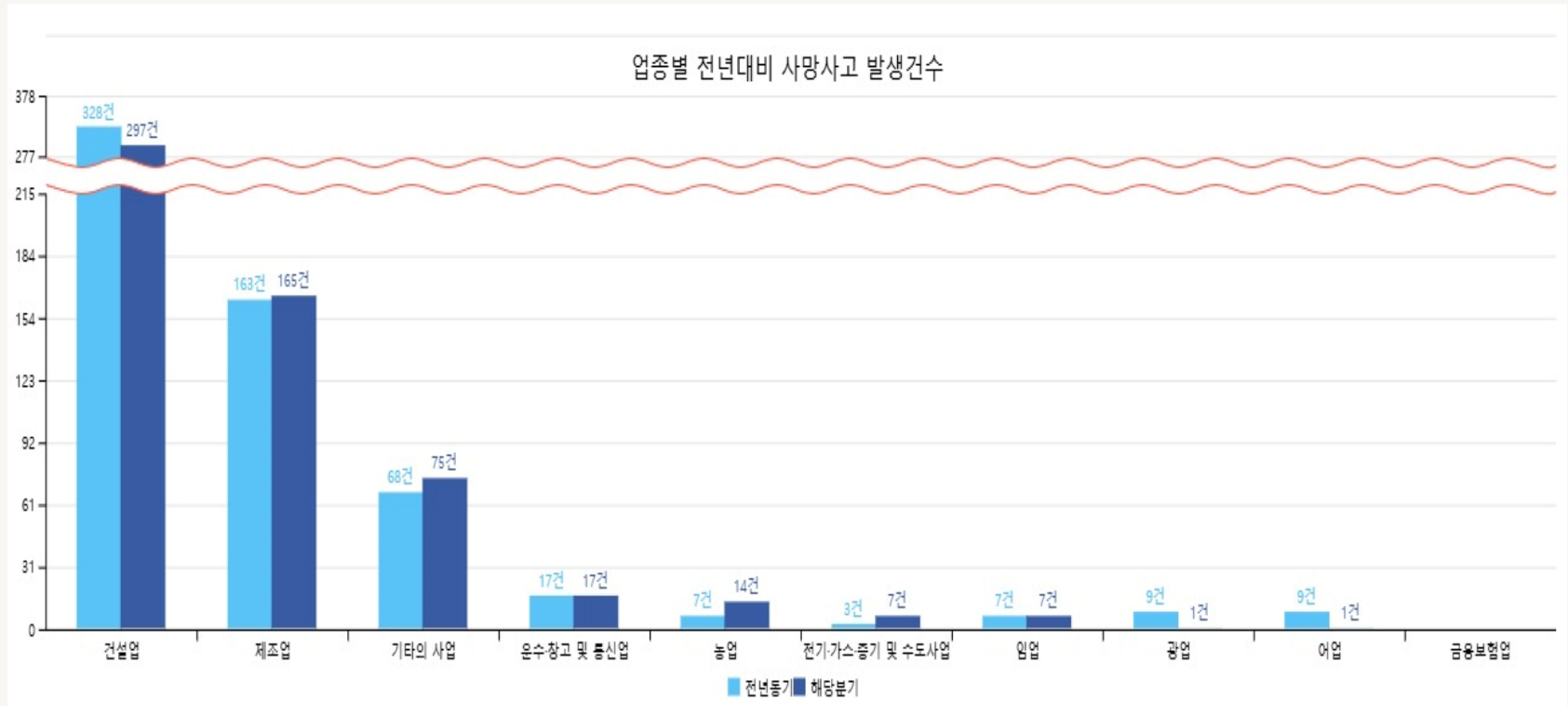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명, 근로자 만 명당]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천 명)	17,062	17,969	18,432	18,560	19,073	18,725	18,975	19,379	20,174	20,637
사망자수(명)	1,850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2,080	2,223	2,016
사망률(만 명당)	1.08	1.01	0.96	1.05	1.12	1.08	1.09	1.07	1.10	0.98

출처: [2023년 산업재해 통계(24.3.7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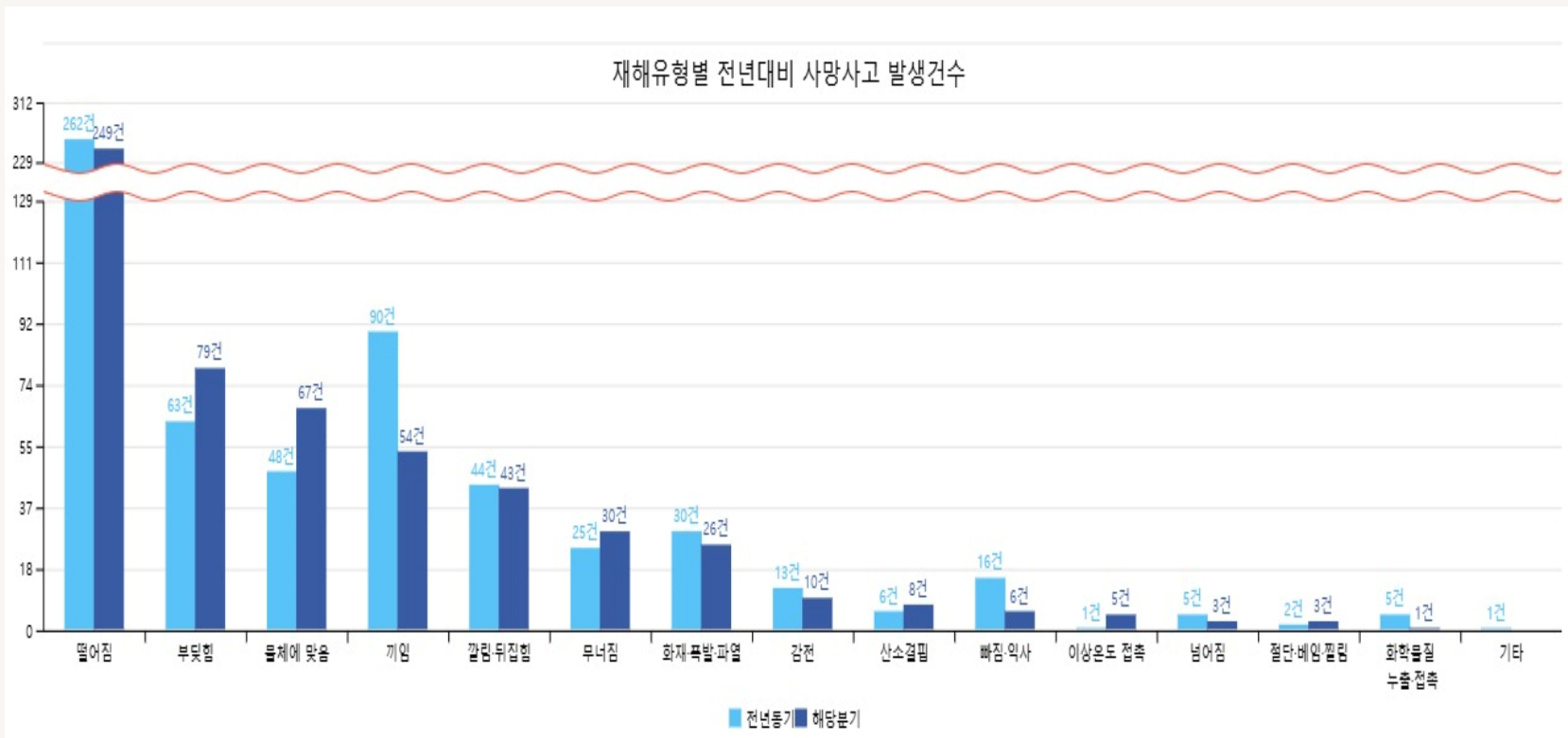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 발생현황*(2023년)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 발생현황*(2023년)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2025년 01일 기준(언론보도 자료: 실제 수치와는 다를수 있음)

항 목	건 수	비 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 건수	• 약 600건	
노동청 수사 진행 및 검찰 송치 현황	• 검찰송치 170여건 • 내사종결 50여건 • 노동청 수사 진행 중 290여건	• 내사 종결은 수사(피의자 입건) 이전 단계에서 조사 후 종결 사안 • 노동청 송치기간 평균(215일, 구속영장 6건 신청 및 1건 발부 (23.8.31 기준))
검찰 처분 현황	• 기소 31건 • 불기소 4건	• 불기소: 급성중독 1건, 끼임 1건, 폭발 1건, 추락 1건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현황('22.1.27~'25.1월) : 약 600건 중 약31여건 기소

순번	기업명	사고개요	위반사항(시행령 제4조)
1	00파트너스 (건설)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8호(재해대응매뉴얼)
2	00제강	근로자의 다리가 방열판(12ton)에 깔려 과다출혈로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9호(도급사업)
3	000건설	거푸집 높이 조절 중 구조물이 쓰러지며 근로자가 철재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4호(예산),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7호(종사자 의견), 8호(재해대응매뉴얼)
4	00건설	용접근로자가 지나가던 중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1호(경영방침), 4호(예산),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8호(재해대응매뉴얼)
5	00건설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190킬로)에 맞아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9호(도급사업)
6	0000산업 (건물관리)	근로자가 아파트 현관에서 사다리(1.1미터)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중 추락해 사망	1호(경영방침),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7호(종사자 의견)
7	00종합건설	근로자가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사망	1호(경영방침),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7호(종사자 의견), 8호(재해대응매뉴얼)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현황('22.1.27~'25.1월) : 약 600건 중 31여건 기소

순번	기업명	사고개요	위반사항(시행령 제4조)
8	00산업	근로자가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여 집단 급성간염 발병(16명)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9	00철강	근로자가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어 과다출혈로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법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10	00건설	상수도확장공사현장에서 청소하던 하청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2호(전담조직),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11	(주)00 (건설)	근로자가 지하3층 환기구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4호(예산),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12	00건설	근로자가 주차타워 지하에서 단열재부착작업 중 리프트가 상승하며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7호(종사자 의견), 9호(도급사업)
13	00포장	근로자가 골판지 가공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로 말려들어가 몸이 끼여 사망	3호(유해위험요인), 5호(안전보건책임자등 평가), 8호(재해대응매뉴얼)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현황('22.1.27~'25.1월) : 약 600건 중 31여건 기소

순번	기업명	사건개요	위반사항(시행령 4조)
14	00 산업개발	대구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1호(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설정)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9호(도급관련 기준, 절차 및 점검)
15	00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기계 내부 청소작업중 금형 사이에 머리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8호(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16	00 종합건설	시흥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골 절단 작업중 누전사고 발생으로 사망	1호(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설정)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4호(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7	00 건설	창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면 견출작업(말비계 사용) 중 계단 사이로 추락 사망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7호(종사자 의견 청취 및 점검 등) 8호(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18	영광	천장 크레인으로 중량물(4.37t)을 이동시키던 중 섬유벨트가 중량물의 날카로운 부분과 마찰되면 끊어져 낙하,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전치 12주 부상을 당함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9호(도급관련 기준, 절차 및 점검) 5조 2항 1호 관계법령 의무이행 반기 1회 점검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현황('22.1.27~'25.01월) : 약 600건 중 31여건 기소

순번	기업명	사건개요	위반사항(시행령 4조)
19	00 종합건설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벽체를 절단하고 있었음, 그 때 259kg 철근콘크리트가 한 꺼번에 떨어지면서 이동식 비계를 2m 가량 튕겨냈고, 재해자는 1.8m 높이 비계에서 추락 사망	1호(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설정)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7호(종사자 의견 청취 및 점검 등) 8호(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20	00 종합건설	6층 발코니에서 할석 작업을 위해 작업 발판(높이 1.7m)에 오르던 재해자가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3호(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업무수행 조치)
21	00 에스엔씨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선박의 화물창고 내부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가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안전대의 고리 미 체결 상태로 8m 아래로 추락 사망함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7호(종사자 의견 청취 및 점검 등) 9호(도급관련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22	00산업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약 3.9m 높이에 설치된 오수관에 A형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 걸친 다음, 사다리를 올라 오수관을 분리 점검하던 중 사다리 접합 부분 파손으로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 사망	3호(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5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업무수행 조치)
23	00 플라임	천장크레인으로 탈수기(5t)를 본체에 안착 시키는 작업중,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의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서 전선을 연결하던 재해자의 머리가 끼었 치료중 사망함	2호(전담조직 설치 의무) 3호(유해 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 업무절차마련)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중처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25.1월 기준)

구 분		조항 내용	위반건수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1호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8
	제2호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2
	제3호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24
	제4호	안전보건 예산편성	6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22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1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8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10
	제9호	도급,용역, 위탁시 조치	7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청취, 법령위반	4

(출처: 경총보고서 2025.01월, 중처법 판결동향보고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판결동향(25.1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 1월까지 약 600여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약 31건에 대해 법원 판결(1심기준) 됨
 - 유죄선고는 29건(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해 23건, 벌금형 2건), 무죄 2건
 -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 노동청·검찰 수사 단계
- 법원에서는 기소된 사건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

※ 노동청·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고로서 경영책임자에 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 총 31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실형은 4건 나머지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
그리고, 31건의 판결 중 24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호, 제5호, 제8호 위반이 인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는 사항으로 확인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판결동향(25.01)_출처(경총보고서)

-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선고(징역 1년-1건, 집행유예 2년-3건) 사례

구분	회사	형량	실행 선고 이유
2호	철강 제조업체	징역 1년	과거에도 <u>산업재해 빈번히 발생</u>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에도 산업재해 발생)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u>동종 전과 4개</u>
15호	자동차 부품업체	징역 2년	사고 발생 10일 전 안전전문기관의 경고 무시하고 <u>안전조치 미이행 방치</u> 다른 설비들도 전반적으로 방호장치 기능 상실
20호	선박 수리업체	징역 2년	대표이사 <u>동종 전과 7개</u> , 사업장에서 <u>1년 전에도 2건의 사망사고 발생</u>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u>법정에서 불량한 자세로 일관</u>
26호	건설업체	징역 2년	대표이사 <u>동종 전과 3개</u> 사고 발생 4개월 전 지적 받았음에도 <u>안전조치 미이행 방치</u>

- 중처법 무죄 선고 사례

구분	회사	무죄 선고 이유
26호	건설업체	<u>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미대상</u>
31호	자동차 부품업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u>인과관계 없음</u>

제 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사례 및 교훈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1) 제1호 위반_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_제4호 사건판결

✓ 사건내용

- 22년 5월 07시 50분경

- 00건설 000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후면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00건업) 소속 피해자가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Chat GPT로 만들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1) 제1호 위반_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_제4호 사건판결

✓ 판결

1) 피고인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피고인 회사의 22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2.01.5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함

2) 22년도 안전보건 경영 목표:

“전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의식수준 향상”

안전 보건 경영방침

“1) 안전문화 확산, 2) 교육계획”으로 설정

3) 법원 판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의 건설회사에 일괄적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
- 특히 재해의 예방,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음이라고 판결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1) 제1호 위반_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_제4호 사건판결

피고인		위반법령	판결내용
■ 건설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00,000원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사회봉사
하청업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0,000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사회봉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직영 10개월(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사회봉사
	굴착기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사회봉사

✓ 시사점

- 1) 사업, 사업장이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안전보건목표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함(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P45)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2) 2호 위반_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_ 10호 사건 판결

✓ 사건내용

- 2022년 6월
- 00시 상수도 확장 사업의 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청소하던 수급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삭기 에 깔려 사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2) 2호 위반_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_ 10호 사건 판결

✓ 판결

- (1) 근로자 500인 이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 (2)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3)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 (4)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않음
- (5) 작업반경 내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

대상	■ 건설	■ 건설(하청)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현장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굴삭기 운전자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법인	벌금 8,000만원	벌금 800만원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2) 2호 위반_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_ 10호 사건 판결

✓ 시 사 점

(1) 10호 판결만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건임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건설사업자인 경우 **시공 능력 순위가** 200인 이내 건설사업자 경우 전담조직을 두게 되어 있음

(3)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담조직을 법에서 요구되도록 구성됨
- 대부분 사업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000 사건



000 화재폭발 사고(24.6.24. 10경)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_000 사건

✓ 사고경위_아리셀 진상규명 1차보고서내용

- 2024. 6. 24. 10시 30분경, A사업장 내 제조동 2층에서 **군납용 원통형 리튬배터리**의 검수 및 포장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분말 소화기 등으로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배터리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함(리튬전지 3만5천개 전소). **최초 발화 42초만에** 사업장 내 농연이 확산되어 **23명의 근로자가 사망,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
-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60일 만인 지난 8월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가 발표 됨. 그 결과에 따라 8월 28일 자정이 가까운 시점, (주)000의 **경영책임자 000이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됨.**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_000 사건

✓ 사고경위_000 진상규명 1차보고서내용(사용물질 유해위험성)

1. 리튬(Li, 음극재) : **물반응성 물질**, 190°C 이상 산화리튬(고온 발열), 등유 등 보관
 -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 생성 및 발열, 질소와 결합하면 암모니아(독성, 인화성) 발생
 - => (기준규칙 별표1) 물반응성 물질 : 리튬
 - 위험물안전관리법** : 19년 리튬 보관 허가량 50kg 위반, 20년 소방시설 불량 시정명령
2. 염화티오닐(SOCl_2 , 양극재) : 무색 액체, 140°C 이상에서 염소가스 발생
 - => 산안법상 **급성독성물질**(기준규칙 별표1), 화관법상 **유해위험물질**(부식성)
3. 리튬-염화티오닐 클로라이드 : 양극, 음극 단락으로 발열
 - 독성물질(양극재에서 염화수소, 이산화황) 노출 및 격렬한 폭발 화재 위험(SO_2 , 열화상)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000 사건

✓ 사고경위_ 아르셀 화재폭발 사고

- 아르셀은 이미 2019년 리튬 보관량 초과에 따른 벌금뿐 아니라,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음. 또한 2021년에 2건, 2022년 1건, 참사 2일 전인 6월 22일 1건의 화재가 있었음. 4건 모두 리튬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지만, 소방당국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임.

화재·폭발의 위험을 포함하지 못한(?)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_000 사건

- 아리셀에서 일했던 복수의 작업자들은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으며, 과거에도 몇 차례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사한 작업자들에게 전해 듣는 등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¹⁶⁾ 이런 사실만으로도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리튬배터리의 화재·폭발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임.
- 그러나 아리셀의 왜곡된 고용구조에서 위험성평가는 내실 있게 실시되지 않았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유해·위험을 발굴하는 과정과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고 생략됐음. 이런 현실은 안전보건공단의 아리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심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공단의 2021년 평가에는 “위험성평가 회의에 근로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22년 평가에는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음. 아리셀 사측의 위험성평가가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채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기능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임.
- 아리셀에서 일했던 복수의 정규직 작업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도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유해·위험 발굴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회사차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에 대해서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거나, 관련한 회의를 했거나, 건의를 하는 절차(소원수리함 같은 형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혀 모르고,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음.
- 이런 현실임에도 아리셀은 2021년 2월 25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 2024년 2월 24일까지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아르셀 사건

■ 사고경위_ 000 화재폭발 사고

-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4건의 화재(2021년 2건, 2022년 1건, 2024년 1건)에 대하여 아르셀은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이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아르셀에서 드러난 유명무실한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가 이대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 재정, 인력 등의 현실적 여건과 안전보건역량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비껴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만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의 실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상태는, 사실상 실존하는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험성평가를 매개로 행정당국과 소규모사업장이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이번 참사에서 확인한 것임.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아르셀 사건

■ 사고경위_ 000 화재폭발 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 ✓ 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기준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 의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000 사건_산안법 위반사항

- (1) 기준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3만5천개 보관(완제품 위험물? 작업에 필요한 양?)
- (2) 기준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피난 반대방향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시건
- (3) 기준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비상구 통로 미확보
- (4) 기준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기준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완제품 전지 통로에 적재
 -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000 사건

■ 사고경위_ 아르셀 화재폭발 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만약, 대피하려고 했다면 가능했을까?			
⇩	⇩	⇩	⇩
숨겨진 비상구	ID카드, 지문으로 열리는 정직원용 문	출입구 앞 완제품 적재	대피로를 모름 작업장 출입구 외에는 창문 하나없이 막힘
⇩	⇩	⇩	⇩
비상구 존재 모르고 위치도 모름	불법고용 일용직 형태 노동자들에게 미제공	위험생산물 적재 관리보다는 편의성	일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대피로 안내·훈련없음
-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출입구가 막히기 전이었다면 가능. - 위치를 모르는 비상구, 출입구 앞 완제품 적재상태, 정규직만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야 도달하는 비상구, 출입문을 제외하고 사방이 막힌 작업공간이 장애물로 존재하고 - 일용형태로 하루하루 고용 여부가 달라지는 노동자들은 대피 훈련을 해본 적도, 실질적 안전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비상구로 향하는 비밀의 문도 알지 못했기에 - 출입구 앞 불이 커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여 잘 보이지 않는 때에는 탈출이 불가능.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 _000 사건

✓ 사고경위_ 아르셀 화재폭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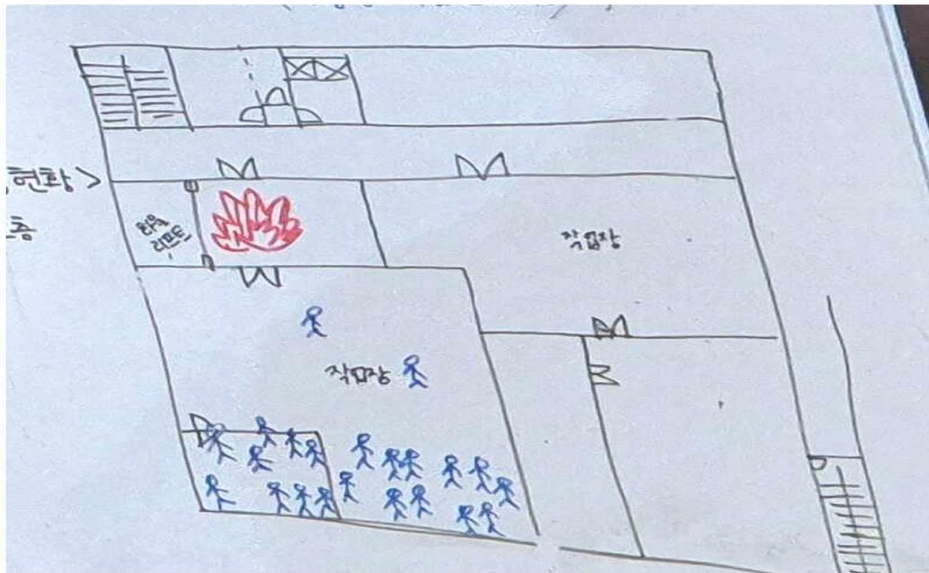


그림 5. 2024.06.27.한겨레21. 2024년 6월24일 화재 사고 직후 회사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그린 실제 건물 구조도(위). 반면 2018년 공장 사용 승인 당시 제출된 도면(아래)엔 별도의 위험물 보관 장소가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사용승인 할 때 낸 도면과 실제 건물 구조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3) 3호 위반_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등_000 사건

✓ 제3호-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주요 위반내용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 모든 사건에서 주요 위반내용

- (1)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음
- (3) 형식적으로 작성됨(사업/작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 (4)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음
- (5) 반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6) 점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7) 결함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4) 4호 위반_ 안전보건 예산편성_3호사건 판결

✓ 사건내용

- 2023년 03월 16일

- 00건설 협력업체 소속인 중국인 노동자가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의 높낮이를 조정하던 중 동바리가 쓰러져 가슴을 맞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져 적재된 철근더미에 머리를 부딪힌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

✓ 판결

- 피고인 D(대표이사)는 위 공사의 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음**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 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해 예방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4) 4호 위반_ 안전보건 예산편성_3호사건 판결

피고인		위반법령	판결내용
건설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00,000원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하청업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7,000,000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 시사점

-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해야하는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비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 (2) 위임전결 규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인 업무권한 및 예산 권한 명시(반드시)
- (3) 편성된 예산에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 조치 해야함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00제강_ 22년 3월)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00제강 사건경위_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치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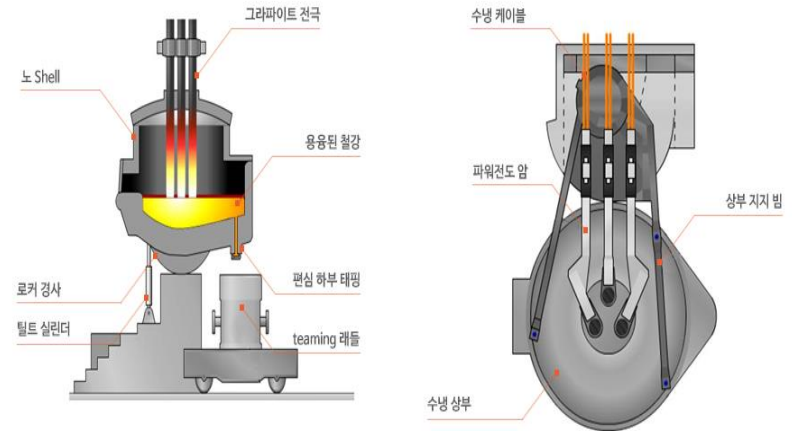
- 사고내용: 22년 3월 16일 하도급 근로자 1명 사망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낙하된 방열판과 바닥사이에 다리 협착, 대동맥 파열 쇼크로 사망
- 판결일: 23년 4월(1년 1개월소요)
- 피고인: 00제강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 대법원 확정(23.12.28)
하청 대표이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원청 벌금 1억원
- 위반사항
 - 중처법: 제4조 5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조치
제4조 9호 도급관련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산안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덮개, 울 미 설치, 출입금지 미 실시,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미 설치
비상정지장치, 발끝막이판, 안전통로, 계단참 미 설치, 감전방지조치
접지 미 실시, 고열장해 예방조치 미 실시 등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사고경위_00제강



- ☞ 용광로 가동률이 높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부품이 바로 방열판이다. 방열판에 지속적으로 불꽃이 튀다 보면 산화한 부분도 생기고 잡 찌꺼기가 녹아 붙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마련이다. 통상 1년에 2~3회는 방열 판에 붙은 불순물을 갈아내고 용접하는 등의 수선 작업을 진행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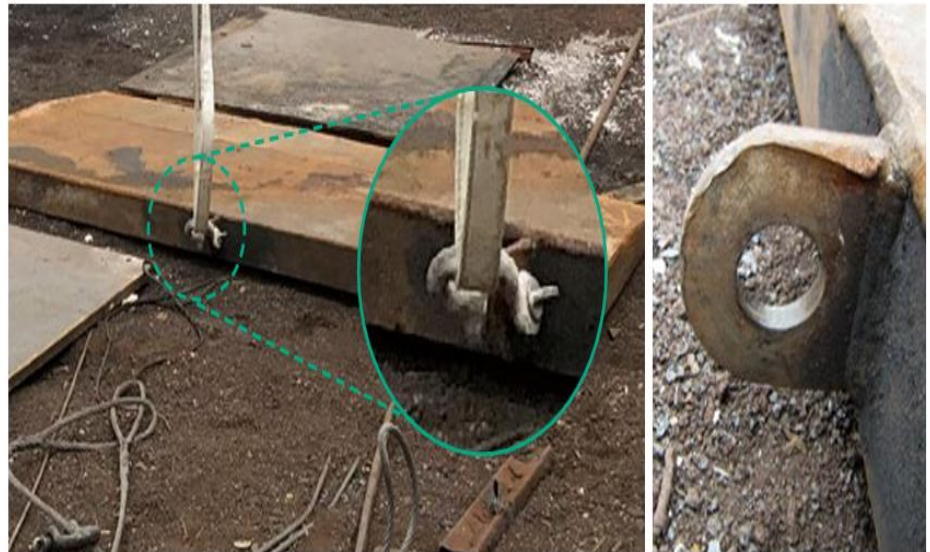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사고경위_00제강



방열판 수리 작업 현장에서 쓰인 갠트리크레인



재해자가 줄걸이를 할 때 방열판 러그에 샤클을 사용하지 않고
섬유벨트를 묶어서 연결했다

방열판의 러그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사고경위_00제강



끊어져버린 섬유벨트



올바른 중량물 연결 방식은 러그에 바로 섬유벨트를 묶는 게 아니라 샤클을 사용해서 걸어야 한다



샤클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사고경위_00제강

- H제강 :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K산업(하청):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확보의무(고의)**
 -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5호)**
 -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 마련(9호)
- **안전보건조치의무(고의), 업무상 주의의무(과실) 위반**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손상여부 수시점검
 - 크레인 사용 중량물 인양시 근로자 안전거리 확보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판결내용

- K산업 대표이사는 사망자가 혼자 작업하도록 지시, 중량물 취급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H제강 대표이사는 K산업 작업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임을 알고 있었고,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등을 반기 1회 평가, 관리하지 않음**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하지 않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5) 5호 위반_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평가_2호사건 판결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부여,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모든 판결에서 주요 위반내용

- (1) 기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3) 반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평가를 실시 하지 않음)
- (4) 형식적으로 작성됨
- (5)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6) 7호 위반_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_7호 사건 판결

✓ 사건개요

- 23년 2월 23일

- 철거업체(하청) 대표가 00대 학생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무너진 굴뚝에 깔려 사망.

철거업체 대표가 직접 굴삭기를 이용해 굴뚝(높이 약 12미터)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굴뚝 상단 부분(약 6미터)이 낙하해 사망

✓ 판결

- (1)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굴뚝 등 해체작업의 위험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함**
- (2)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뚝 등 해체작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및 이행점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하지 않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6) 7호 위반_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_7호 사건 판결

✓ 판결

원청 경영책임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원청 현장관리감독자(건축이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관리자(실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책임관리자(건축사 사무소 대표)	

✓ 시사점

- (1) 중처벌 시행령 제 4조 제 7호에는 종사자 의견 청취 수단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제안제도** 등 충실히 운영해야 함
 -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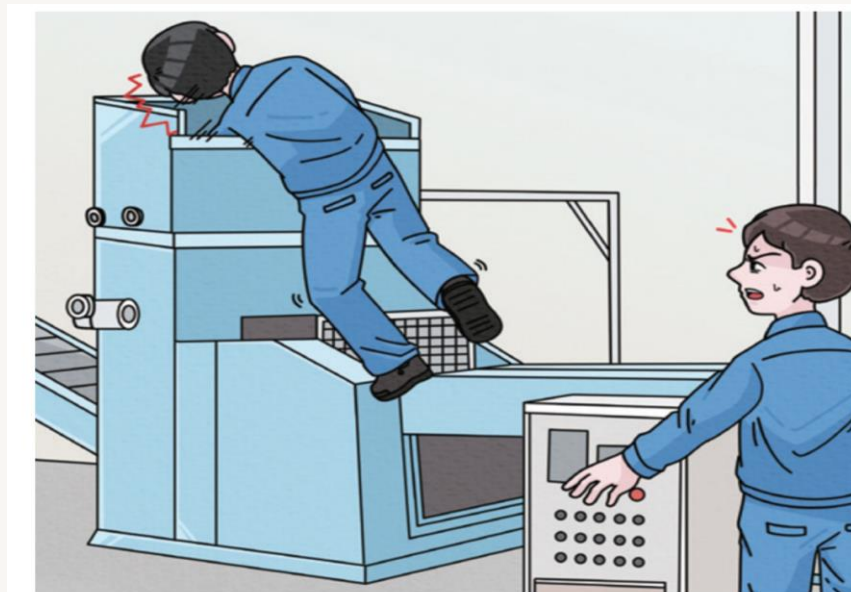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7) 8호 위반_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_13호 사건 판결

✓ 사건의 개요

경사 골파지 제조공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옷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 들어가면서 회전축에 몸 전체가 협착되어 사망



- 끼임 사고 이미지 (사진=안전보건공단)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7) 8호 위반_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_13호 사건 판결

✓ 법위반사항 정리

구분	법 위반	법원지적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실시 및 모니터링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미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평가 미 실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 미실시	중대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작업 전 위험방지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방호덮개 미설치 위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미 작성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7) 8호 위반_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_13호 사건 판결

✓ 판결내용

1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영처리일자 : 2024-01-2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전 2023고단390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계해치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 C
3.가.다. D 주식회사

검 사 [Redacted]

변 호 인 [Redacted]

판 결 선 고 2024. 1. 16.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영처리일자 : 2024-01-26

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
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7) 8호 위반_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_13호 사건 판결

✓ 판결내용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7) 8호 위반_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_13호 사건 판결

✓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 모든 판결에서 주요 위반내용

(1)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법정항목(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제거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조치 등)
포함, 작업중지 권한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화

(2) 해당 매뉴얼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장 특성 반영 시나리오 훈련(화재, 폭발, 추락,붕괴, 협착등) 다양하게 실시_(주기적실시)

(3) 반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반기점검을 통해 해당 매뉴얼을 정기적업데이트, 사업장 내 비치(요약본), TBM/각종 회의체 활용 등
종사자 숙지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8) 9호 위반_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 등_ 제5호 사건판결

✓ 사건내용

- 22년 03월 9일
- 00시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에서 U자형 철근(약 190톤)을 바닥 에 설치하기 위하여 인양을 하던 중 협력업체 00토건 소속 피해자가 한줄로 철근을 슬림 벨트에 묶는 바람에 인양하던 중 낙하한 U자형 철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8) 9호 위반_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 등_ 제5호 사건판결

✓ 판결

- (1)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음
- (2) 이 사건 관계 수급인인 주식회사 A가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조차 할수 없었음에도 도급을 맡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음
- (3) 이로써,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음
- (4) 도급업체 산재예방 위한 조치능력 및 평가기준 절차 마련 없었음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및 교훈

■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8) 9호 위반_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 등_제5호 사건판결

✓ 시 사 점

- (1) 적격 수급업체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2) 기존 수급업체는 반기 1회 이상 적격수급업체 평가 시행 후 계약여부 결정 후 경영층 보고
- (3) 평가점수 낮은 업체 개선조치 요청 또는 계약불가통보하여 업체변경
- (4) 신규업체는 작업 시작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한 후 계약 시행



제 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중처법 적용 주요확인사항

1. 발생한 사고가 중처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중처법상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등 확정
3.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확인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특정 및 의무위반 여부 확인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6.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및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입증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표이사 무협의 사례(검찰 불기소)

11일 발생한 [redacted] NCC 폭발 사고

노동자 4명 사망, 4명 중경상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NCC 공장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은 사촌 형제간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 사고개요

- 사고내용: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작업중 폭발사고로 4명 사망, 4명 다치는 사고 발생(2022.2.11)
- 조사결과: 열교환기 기밀테스트시 압력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았고 백킹디바이스(열교환기 본체와 경판을 연결 장치) 불량

● 대표이사(불기소 처분) 사유

- 중처법시행(22.1.27)전인 21년부터 외부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안전작업허가 절차' 등이 존재하고, 해당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
- 중처법 시행 직 후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반기 1회 안전관련 법령 의무 적용하지 못함 점
- 반면 NCC공장장, 하청업체대표: 산안법 및 형법위법 혐의 기소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표이사 무협의 사례(검찰 불기소)



● 사고개요

- 사고내용: 포항공장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가 몸에 맨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고리를 크레인 도르레 쪽에 걸어 두었는데,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도르레와 함께 안전벨트가 몸에 감기면서 사망(22.3.21)
- 조사결과: 보수작업 중 크레인 **전원 차단되지 않았고**, 신호수 미배치 함. 이런 상황 몰랐던 하청 관리감독자 운전신호에 본 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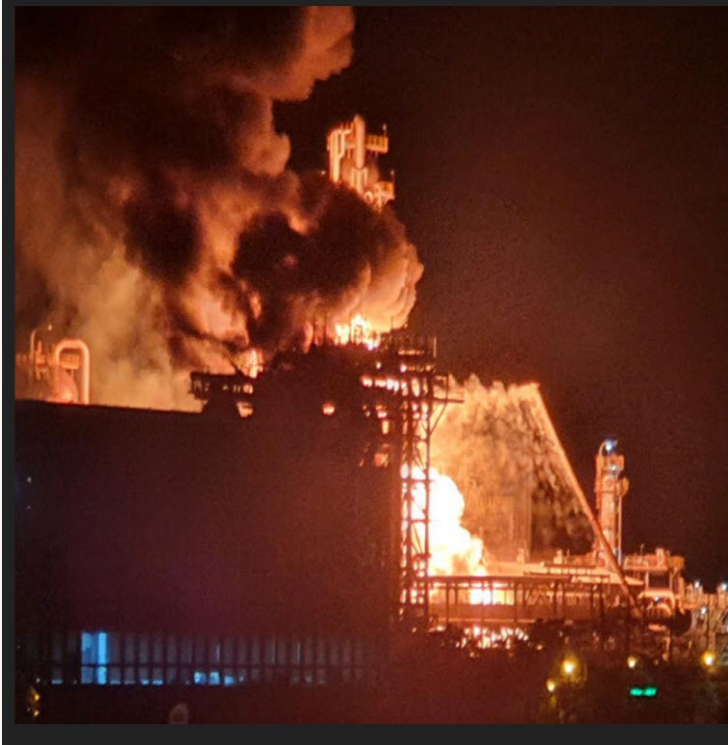
● 대표이사(불기소 처분) 사유

- 자체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방법 및 위험성평가 시기, 절차, 반기별 1회 점검 절차** 등 상세히 규정 준수
- 재해발생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매년 시행
- 수급인 위험성평가 검토하는 절차 마련
- **매년 정기위험성평가 실시(19~21년)**
- 분기별 산안위와 매달 협의체 운영(**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
- 21년 12월 안전협의체에서 **작업전 전원 차단 실시**에 대해 논의 함 (**회의록 있음**)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함**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표이사 무협의 사례(검찰 불기소)

울산 에스오일 공장 화재 폭발 9명 중경상



● 사고개요

- 사고내용: 울산 온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1명사고, 9명 전신화상 등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2022.5.19)
- 조사결과: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공정에서 부탄압축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연결된 탱크에서 가스가 유입되면서 폭발사고 발생으로 추정

● 대표이사(불기소 처분) 사유

- 경영책임자(외국인)는 안전보건 사항을 CSO(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고 CSO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함
- CSO도 중처법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중처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모두 이행했고, 위험성평가 미진하지만 중처법 시행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반기 1회 안전관련 법령 의무 적용하지 못함 점
- 반면 본부장 등 13명 산안법 및 화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표이사 무협의 사례(검찰 불기소)

에어컨 실외기 작업 중 '또' 30대 노동자 추락사

00솔루텍 노동자 진입로 난간 없이 홀로 점검 ... 2인1조 사다리차 이용 규정 안 지켜

이재기자 입력 2022.04.14 07:30

댓글 4



▲ 이씨가 작업을 하다 추락한 사고현장의 모습.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난간도 없이 설치돼 있다. <금속노조>

● 사고개요

- 사고내용: 00 전자 유지보수서비스 자회사인 000솔루텍 소속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22.4.12)
- 조사결과: 000솔루텍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기소

● 대표이사(불기소 처분) 사유

-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수리 원칙
- 해당 수리기사는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작업을 하면서 고층부 작업용 차량 동원 없이 혼자 건물 외벽 밖으로 나가 실외기 점검 하다가 사고가 발생
- 안전수칙 위반한 것으로 산안법 위반자체가 없기에 중처법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 수리기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불기소 처분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응방안

1.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대응

- 내규, 조직 및 권한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명확하게 할 것
- 종사자의 범위 파악(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를 시스템화

- 노사합동 현장순회점검, 아차사고분석, 제안제도 실시 등

3.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안전작업허가서, TBM 실시 등
- 산업재해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 시행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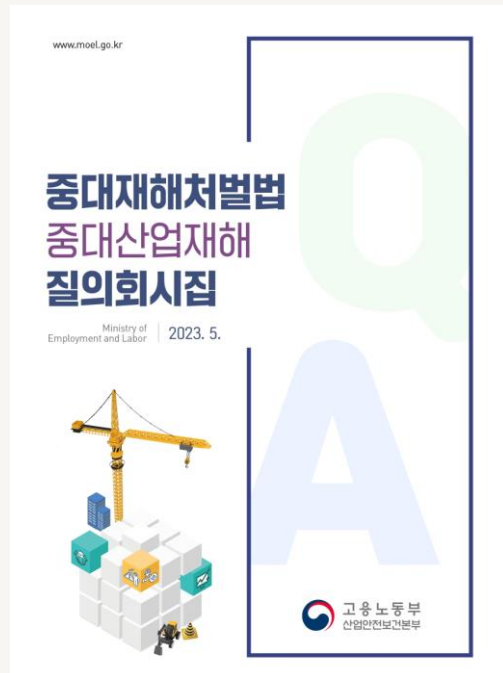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적법하게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산안법에 따른 선임
 - 적정한 권한과 예산 부여로 담당업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업무수행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 및 시정(평자자료, 시정명령한 자료 준비)
5.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회(회의록 준비)
 - 그 외 종사자의 의견청취 철처(안전신문고, TBM 등)
6. 비상대응 매뉴얼의 존부 및 그 내용
 - 중대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근로자 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 실시
 - 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모의 훈련

제5장: 중대재해 대응방안

■ 대응방안

7. 협력업체 평가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 실시(기록 보존)
- 협력업체 평가 기준 미달 경우 조치(신규계약 및 갱신, 계약 기간중 평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소개-정책자료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민동준 강사: djmin8347@gmail.com



044-862-0381



Homepage. www.dodbom.co.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507호-510호(소담동, 법조타운B)



DODBOM E&C
주식회사 돈봄이앤씨

